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

조례 심사보고서

○ 일 시 : 2022. 9. 7. (수) 10:00

○ 장 소 : 본회의장

○ 안 건

-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8.

나. 발 의 자 : 배정수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22. 8.

라. 상정일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8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교섭단체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
- 위원 선임 시 대표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각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여 이를 교섭단체 간에 교섭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정당의 정책이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최대한 구현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2. 8.
- 나. 발 의 자 : 김종복 의원 외 3인
- 다. 회부일자 : 2022. 8.
- 라. 상정일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8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복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여, 의원의 의안 발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의안의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자구 정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안 발의를 활성화하고자, 안 제7조 중 의안 발의 정족수를 기존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자구정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